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등 5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조(「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전단 중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전단 중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3조(「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6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를 “경찰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4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5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위원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7조(「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관세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8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장학관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교육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9조(「국가교육위원회 직제」의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4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장학관 또는 4급”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4급”으로 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장학관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10조(「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국가보훈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11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인권위원

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서기관”을 “4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행정사무관”을 “5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운전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차별시정국장, 홍보협력과장, 장애차별조사1과장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을 “위원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으로 한다.

제12조(「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부이사관·경무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경무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을 “11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⑧ 제7항 및 별표 2의4에 따른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국무조정실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표 2의3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13조(「국무총리비서실 직제」의 개정)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14조(「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위원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15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국방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16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0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국세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제17조(「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55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18조(「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총리령”을 “위원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로 한다.

제19조(「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기상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20조(「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21조(「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림축산식품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22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의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농촌진흥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제23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의 개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4조(「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25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을 “4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의 제목“(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제5조제3항 및 별표에도 불구하고 무역조사실장 및 덤핑조사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한다.

제26조(「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를 “문화재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27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7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28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의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기관”을 “4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29조(「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본문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4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국제협력담당관은”을 “위원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으로 한다.

제30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방위사업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31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 후단 중 “제24조제5항 단서”를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제24조제5항 단서”를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법무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32조(「법제처 직제」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법제처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33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방부령”을 “병무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제34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35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의 개정)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기관”을 “4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기관”을 “4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서기관”을 “4급”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서기관)”을 “(4급 1명)”으로, “(서기관 1명, 행정주사 1명)”을 “(4급 1명, 6급 1명)”으로 한다.

제36조(「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산림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본문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4급”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38조(「새만금개발청 직제」의 개정)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5조의 제목“(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40조(「여성가족부 직제」의 개정)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실·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41조(「예술원사무국직제」의 개정) 예술원사무국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3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2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5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5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각각 “외교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43조(「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44조(「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5조(「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인사혁신처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46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를 “조달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47조(「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48조(「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제5항 단서”를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제5항 단서”를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질병관리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49조(「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2개 개방형직위”를 “통계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2개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50조(「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실·국장급 1개 직위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통일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51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특허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52조(「학술원사무국 직제」의 개정)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사무국장의 직위”를 “교육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53조(「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54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55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5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환경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1]

검사 외의 대검찰청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총계	517
일반직 계	517
고위공무원단	1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2
검찰수사서기관	3
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1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5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과학기술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검찰사무관	47
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
검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마약수사사무관	2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검찰주사	81
마약수사주사	2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9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2
방호주사	1

검찰주사보	86
마약수사주사보	2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9
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
임업주사보	1
운전주사보	2
통계주사보	1
검찰서기	61
마약수사서기	3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6
시설서기 또는 공업서기	1
사서서기	2
검찰서기보	1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
방호서기	2
운전서기보	12
방호서기보	11
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심리연구관 또는 학예연구관	10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심리연구사 또는 학예 연구사	30
기록연구사	5
기계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50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범죄분석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형사사진감식·문서감정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통역 담당)	1

[별지 2]

[별표 2]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공무원정원표

(제2조제2항 관련)

총계	7,939
일반직 계	7,939
고위공무원단	25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15
검찰수사서기관	113
검찰수사서기관 · 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5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
검찰사무관	405
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5
마약수사사무관	21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검찰주사	1,379
검찰주사 또는 마약수사주사	1
마약수사주사	67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8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7
검찰주사보	1,792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1
마약수사주사보	85
사서주사보	2
사서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

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4
임업주사보	1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5
운전주사보	3
방호주사보	3
검찰서기	1,030
검찰서기 또는 마약수사서기	1
마약수사서기	66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7
위생서기	1
시설서기 또는 공업서기	40
운전서기	7
방호서기	2
검찰서기보	851
마약수사서기보	54
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6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3
운전서기보	250
방호서기보	140
보건연구사	2
기록연구사	23
건축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3
열관리운영서기보	9
사무운영서기보	1,269

[별지 3]

[별표 6]

검사 외의 지방검찰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0조의2 관련)

제20조의2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
----	---

일반직 계	1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	---

[별지 4]

[별표 1]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291
정무직 계	3
실장(장관급)	1
차장(차관급)	2
일반직 계	288
고위공무원단	2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4
서기관	26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기록연구관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기록연구관	17
행정사무관	80
출입국관리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 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 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기록연구관	34
전산사무관	3
행정주사	12
행정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 연구사	5

전산주사	1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6
전산주사보	3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13
행정서기보	9
운전서기보	4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별지 5]

[별표 1의2]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291
정무직 계	3
실장(장관급)	1
차장(차관급)	2
일반직 계	288
고위공무원단	2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4
서기관	26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기록연구관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 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 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7
행정사무관	80
출입국관리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 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4
전산사무관	3
행정주사	13
행정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 록연구사	5

전산주사	1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7
전산주사보	3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12
행정서기보	8
운전서기보	4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별지 6]

[별표 2의3]

대테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3항 관련)

총계	35
일반직 계	2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 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 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 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 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방 재안전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항공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12
행정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
행정서기	1
운전서기	1
소방공무원 계	3
소방령	1
소방경	2
경찰공무원 계	7
경무관	1

경정

2

경감

4

[별지 7]

[별표 2의4]

국제개발협력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6항 관련)

총계	29
일반직 계	29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5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1

[별지 8]

[별표 3]

국무조정실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5항 관련)

미세먼지개선기획단(존속기한: 2024년 2월 14일)

총계	17
일반직 계	16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 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 재안전사무관·행정전문관·공업전문관·보건전문 관·환경전문관 또는 시설전문관	10
행정주사보	1
외무공무원 계	1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	1

[별지 9]

[별표]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제5조제1항 관련)

총계	97
정무직 계	1
비서실장(차관급)	1
별정직 계	2
비서요원(6급 상당)	2
일반직 계	94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또는 별정직	1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3급 상당, 4급 상당)	1
서기관	5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기록연구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7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기록연구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5급 상당)	3
행정사무관	7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12
행정주사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4
행정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행정서기	3
행정서기보	3
전기운영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1
운전서기보	8
임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4
조리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10 <u>퍼센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 ⑥ (생략)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특허수사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4명(<u>서기관</u> · <u>기술서기관</u> 또는 행정사무관 4명)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특허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⑦ ----- ----- ----- ----- ----- <u>과학기술</u> <u>서기관·서기관</u> ----- ----- -----. ----- -----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한시정원) 첨단기술의 유출 범죄 수사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검찰청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u>서기관·기술서기관</u> 또는 행정사무관)은	제20조의2(한시정원) ----- ----- ----- ----- ----- ----- ----- ----- ----- ----- <u>과학기술서</u> <u>기관·서기관</u> -----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특허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 -----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5조(<u>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u>) <u>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u> 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5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u>경찰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u> ----- -----.	제65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u>경찰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u> ----- -----.	제65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u>경찰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u> ----- -----.	제65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u>경찰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u>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u>10퍼센트</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u>7 퍼센트</u>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0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실·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 <u>10</u> <u>퍼센트</u>----- -----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령·예규</u> <u>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
--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②·③ (생략)		----- <u>10퍼센트</u> ----- -----.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② (생략)		----- <u>10퍼센트</u> ----- -----.		
제24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u>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4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위원</u> <u>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u> <u>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u>10퍼센트</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u>10퍼센트</u> -----

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 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u>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u> <u>하는 개방형직위</u>는 임기제공무 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u> <u>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u> <u>정하는 개방형 직위</u>-----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u>10퍼센트</u> ----- -----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u>10퍼센트</u> ----- -----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u>10퍼센트</u> ----- -----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u>10퍼센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u>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9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관세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 -----.	제29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관세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 -----.	제29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관세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 -----.	제29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관세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u>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의</u> 정원을 포함하되,	② ----- ----- --. ----- ----- ----- <u>장학관 또는 4급 공무원</u> ----- ----- ----- ----- ----- ----- ----- ----- ----- ----- ----- ----- ----- ----- ----- -----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 략)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9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실·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u>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u>10퍼센트</u> ----- -----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교육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
---	---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육발전총괄과) ① 교육발 전총괄과장은 <u>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6조(교육발전총괄과) ① ----- ----- <u>4급</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과정정책과) ① 교육과 정정책과장은 <u>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7조(교육과정정책과) ① ----- ----- <u>장학관 또는 4급</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참여지원과) ① 참여지원과 장은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 로 보한다.	제8조(참여지원과) ① ----- ----- <u>4급</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 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 급 공무원 및 <u>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의 정원을 포함 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 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② ----- ----- -----. ----- ----- <u>장학관 또는 4급 공무원</u> ----- ----- ----- -----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u>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민참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u>	----- ----- ----- ----- -----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u>10퍼센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실·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제33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 형직위</u>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	<u>국가보훈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 방형 직위</u>----- -----.
---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7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관리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u>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u> 보한다.	② ----- ----- ----- <u>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u> ----- -----.
③ 삭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u>부이사관 또는 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7조의2(운영지원과) ① ----- ----- <u>3급 또는 4급</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①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u>부이사관 또는 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① ----- ----- <u>3급 또는 4급</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정책교육국) ① ~ ③ (생략)	제8조(정책교육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교육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및	④ ----- ----- -----

홍보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 ⑩ (생략)

제9조(침해조사국) ① (생략)

② 침해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 아동청소년인권과 및 기획조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제9조의2(차별시정국) ① (생략)

② 차별시정국에 차별시정총괄과,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및 성차별시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9조의3(군인권보호국) ① (생략)

② 군인권보호국에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

3급 또는 4급-----

---.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침해조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3급 또는 4급 -----
----- 4급 또는 5급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차별시정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3급 또는 4급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3(군인권보호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제11조(인권사무소) ① 인권사무
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
인권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1조의2(인권팀) ① (생략)

② 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
되, 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
한다.

③·④ (생략)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
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

--- 3급 또는 4급-----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인권사무소) ① -----

4급-----.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인권팀) ① (현행과 같
음)

② -----
----- 5급-----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10퍼센
트-----

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
원 중 1명(운전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④ (생략)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
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
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
례)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6명(4
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5
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할 수 있다.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차별시정국장, 홍보협력과장,
장애차별조사1과장 및 군인권
협력지원과장은 임기제공무원

----- 같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 -----
----- 10퍼센트--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
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 -----

으로 보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하부조직) ① 대테러 센터에 과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4개를 두며, 그 하부조직의 장은 <u>부이사관·경무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19조의4(하부조직) ① ----- ----- ----- <u>부이사관·경무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u>10퍼센트</u> ----- ----- -----.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u>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 ----- <u>11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조세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 설>

② ~ ⑥ (생략)

<신 설>

⑦ (생략)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실·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

정원) ① -----
-----.

----- 10퍼센트 -----

--.

②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⑧ 제7항 및 별표 2의4에 따른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국무조정실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조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
이 지정하는 과장급 5개 직위
및 심판원 심판조사관 2개 직위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u>10퍼센트</u>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②・③ (생략) 제16조(<u>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u>) 실・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 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위원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u> <u>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u> <u>위</u>-----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u>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u>) 실·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u>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u> <u>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u> <u>있다.</u>	제27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국방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u> <u>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u> <u>직위</u>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u>10퍼센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u>기획재정부령</u> 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u>국세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u>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교통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u>10퍼센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	제5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u>10퍼센트</u> ----- -----

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6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실·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u>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국토교통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	-----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제20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제2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	-----	-----	-----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의 방법----- -----.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u>10퍼센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u>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u>)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u>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u> 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7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기상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u>10퍼센트</u> ----- ----- -----.		제27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u>10퍼센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u>10</u> <u>퍼센트</u> ----- -----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u>10</u> <u>퍼센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실·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제29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제29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개방 형직위</u>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	<u>기획재정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 방형 직위</u>-----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식품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 <u>10퍼센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10

<u>퍼센트</u>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0조(<u>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u>) 실·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u> <u>개방형직위</u>는 임기제공무원으 로 보할 수 있다.	<u>퍼센트</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훈령·</u> <u>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u> <u>는 개방형 직위</u>-----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u>10퍼센트</u>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u>개방형 직위의 특례</u>)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u>농림축산식품부령</u> 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0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농촌진흥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u>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 ----- <u>10퍼센트</u> ----- ----- -----.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u>10퍼센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제9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u> <u>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1명, 5급 2명, 6급 10명, 7급 3명, 8급</u>	<u><삭 제></u>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	--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하부조직) ①·② (생략)	제5조(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u> 으로, 산업피해조사과장·덤핑조사과장 및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u>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u> 으로 보한다.	③----- ----- ----- <u>3급 또는 4급</u> -----, ----- ----- ----- ----- <u>4급</u> ----- ----- -----.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별표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5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5조제3항 및 별표에도 불구하고 무역조사실장 및 덤핑조사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 -----.
---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u>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u>) <u>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u> <u>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u> 는 임기 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6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u>문화재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u> <u>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u> <u>개 개방형 직위</u>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u>10</u> <u>퍼센트</u> ----- ----- -----.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u>10</u> <u>퍼센트</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u>10퍼센트</u> ----- ----- -----.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u>10퍼센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2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실·국장급 8개 직위 범위에서	제72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제72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u> <u>개방형직위</u>는 임기제공무원으 로 보할 수 있다.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훈령·</u> <u>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u> <u>는 개방형 직위</u>-----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정책연구위원) ① (생략) ② 정책연구위원은 <u>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5조(정책연구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4급</u> ----- -----.
제6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② 기획조정관 밑에 운영지원담 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 각 1명 을 두되, 각 담당관은 <u>부이사관</u> <u>또는 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③·④ (생략)	제6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u>3급 또는</u> <u>4급</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자문건의국) ① (생략) ② 자문건의국에 자문건의과· 참여협력과 및 미디어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u>부이사관 또는</u> <u>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제7조(자문건의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u>3급 또는 4급</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지원국) ① (생략) ② 위원지원국에 중앙지역과· 중부지역과·남부지역과·미주 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	제8조(위원지원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며, 각 과장은 <u>부이사관 또는 서기관</u>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u>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u> 제10조의2(<u>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별</u>)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u>」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책연구위원 및 참여협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u>3급 또는 4급</u>-----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대변인) ① (생략)	제4조의2(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으로 보한다.	② ----- ----- --- <u>4급 또는 5급</u>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5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② ----- ----- ----- -- <u>3급 또는 4급</u>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5조의2(운영지원과) ① ----- ----- <u>3급 또는 4급</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방송정책국) ① (생략)	제6조(방송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 · 지상파방송정책과 · 방송지원정책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제7조(이용자정책국) ① (생략)

② 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통신시장조사과 · 이용자보호과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및 단말기유통조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략)

제8조(방송기반국) ① (생략)

② 방송기반국에 방송기반총괄과 · 방송광고정책과 · 편성평가정책과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② -----

----- 3급 또는 4급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자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3급 또는 4급 -----

----- 4급 또는 5급 -----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방송기반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및 방송시장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제9조의3(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3급 또는 4급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소장) ① -----

----- 4급 -----

----- 3급 또는 4급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10퍼센트 -----

② (생략)

③ 위원회에 두는 정원 중 방송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보 보호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생략)

제10조의2(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3에 따른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제협력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10퍼센트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위사업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u>10퍼센트</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u>10퍼센트</u> ----- -----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3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국장급 이상 4개 직위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 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방위사업청장이 훈령·예규 및</u> <u>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u> <u>형 직위</u>-----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생 략)	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약물중독재활센터에 약물중 독재활센터장 1명을 두되, 약물 중독재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 으로 보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 재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 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 ----- -----. ----- 제24 조제6항-----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 략)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법 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2 명(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 ----- ----- ----- ----- 제24조제6항----- ----- -----.
제5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제5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u>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u> <u>위</u>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u>법무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u> <u>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u> <u>직위</u>-----.
---	---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u>10퍼센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u>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u>)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u>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u> 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6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법제처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u>10</u> <u>퍼센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u>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u>)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u>국방부령</u> 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제28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병무</u> <u>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u>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u>방법</u>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u>10퍼센트</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u>10퍼센트</u> ----- ----- -----.

②・③ (생략) 제43조(<u>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u>) 실・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방 형직위</u>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보건복지부장관이 훈령・예규</u> <u>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u> <u>방형 직위</u>-----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u>부이사관 또는 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총괄과) ① ----- ----- <u>3급 또는 4급</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예방치유과) ① 예방치유과장은 <u>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5조(예방치유과) ① ----- ----- <u>4급</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독지도과) ① 감독지도과장은 <u>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6조(감독지도과) ① ----- ----- <u>4급</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홍보과) ① 조사홍보과장은 <u>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7조(조사홍보과) ① ----- ----- <u>4급</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제9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공무원의 정원 중 1명(<u>서기관</u>)은 기획재정부, 2명(<u>서기관 1명, 행정주사 1명</u>)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3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은 경찰	③ ----- ----- ----- --(<u>4급 1명</u>)----- (<u>4급 1명, 6급 1명</u>)----- ----- ----- -----

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산림교육원장) ①산림교육 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 기관</u> 으로 보한다.	제17조(산림교육원장) ①----- ----- <u>3급 또는 4급</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u>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u>)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u>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 형직위</u> 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	제34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산림</u> <u>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u> <u>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사무국) ①·② (생략)	제45조(사무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국장은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u>4급</u> -----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u>10</u> <u>퍼센트</u> ----- -----

따로 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8조(<u>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u>) 실·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u>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u>10퍼센트</u>----- -----.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
--	--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1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u>10퍼센트</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u>10퍼센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u>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5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u>10퍼센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u>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실·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u> 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u>여성가족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u> ----- -----.

예술원사무국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 (공무원의 정원) ①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u>3퍼</u> <u>센트</u>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u> <u>센트</u> ----- ----- -----. ② (현행과 같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u>10</u> <u>퍼센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제58조(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① ----- -----

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6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실·국장급 10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제2항에 따른 국장급 직위는 제외한다)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별표 2의 정원 중 국장급 9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별표 5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14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 10퍼센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외교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
-----.

② -----
----- 외교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
-----.

③ -----
----- 외교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
--.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 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 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 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 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u>10퍼센트</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u>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u>) 실·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u>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u> <u>하는 개방형직위</u> 는 임기제공무 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0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u> <u>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u> <u>정하는 개방형 직위</u> -----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u>10</u> <u>퍼센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u>10퍼센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u>10퍼센트</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u>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8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인사혁신처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u>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u> <u>퍼센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u>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u>) <u>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u> 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2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u>조달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u> -----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소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제26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②·③ (생략)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소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② (생략)	제28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실·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u>10퍼센트</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76명(5급 47명, 6급 22명, 연구관 7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u>제24조제5항 단서</u> 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 ----- ----- ----- ----- ----- ----- ----- <u>제24조제6항</u> ----- ----- -----.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의 총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38명(5급 19명, 6급 14명, 연구관 5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10퍼센트-----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4조제6항

 -----.

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질병관리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	-----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소속기관(통계개발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	-----
제22조(<u>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u>) <u>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2개 개방형직위</u> 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2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u>통계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2개 개방형 직위</u>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u>10퍼센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u>10퍼센트</u> ----- -----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36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u>실·국장급 1개 직위 범위에서</u> <u>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u> <u>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u> 있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u>통일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u> <u>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국장</u> <u>급 1개 개방형 직위</u>-----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	-----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	-----
제33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u> 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3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특허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	-----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u>사무국장의 직위는</u>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u>교육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u> <u>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u> <u>개 개방형 직위</u>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실·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u>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방 형직위</u> 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	제53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u>해양수산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 방형 직위</u>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6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u>10퍼센트</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1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환경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u>10퍼센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u>10퍼센트</u> ----- -----

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3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실·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u>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u> <u>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u> <u>있다.</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u>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u>) ----- 환경부장관이 <u>훈령·예규 및 그</u> <u>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u> <u>직위</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0000